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74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유동수·김남근·김교흥

이기헌 • 안도걸 • 정진욱

허종식 • 박홍배 • 안규백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주주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특히 최근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합병, 지배주주간 프리미엄부 주식 매매, 물적분할 후 상장 등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소액주주・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현행 상법이 무력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주 주에 대하여는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 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상 금지되지 않을뿐더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이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 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 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창의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회사의 발전과 장기적인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여,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제382조의3(이사

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제2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제382조의3(이사의 주의의무와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충실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 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 다. ③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 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 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 할 수 있다.